

시 보

선 람	기관의 장

all ways INCHEON

제2156호

2023년 7월 24일 월요일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규 칙

-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43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... 2
-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44호 인천광역시교육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52

고 시
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185호 도시계획시설(도로 중1-2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64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186호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학교(경인교육대학교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· 74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187호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골프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77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188호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,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,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79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-190호 승기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고시 85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-3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87

공 고
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775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94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791호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96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795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98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799호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공고 99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803호 공해차량 제한지역(LEZ) 운행제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00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80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102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80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03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80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04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810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105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-1815호 인천광역시 버스 요금조정 결정 공고 10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-35호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-27호(2023. 5. 8.)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,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7월 24일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

◆ 변경사유

- 주민 편의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장기 미개발 부지인 일반상업용지(C1~C3)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
 - 일반상업용지(C1, C2) 획지 계획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삭제
 - 일반상업용지(C1~C3) 허용용도 중 오피스텔 비율 완화(50%→ 70%)
 - 일반상업용지(C1~C3) 허용용도 중 의료시설(병원) 추가
- 학생수 대비 협소한 학교부지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조정
 - 학교용지(초1, 중1) 건축한계선 축소(10m → 3m)

◆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

1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: 변경 없음
2.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: 변경 없음
3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: 변경 없음
4. 개발사업시행기간: 변경 없음
5.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: 해당사항 없음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: 변경 <붙임1>
7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: 변경 없음

8.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

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(☎032-453-7823)에 갖추어 놓음.
- 지형도면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- 지형도면 고시는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제16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로 같음

<붙임1>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: 변경

□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(변경없음)

2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(변경)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)

1) 주택건설용지(변경없음)

2) 상업업무시설용지(변경)

가) 일반상업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지				비고
			기정		변경		
			위치	면적(㎡)	위치	면적(㎡)	
C-1	C-1	14,833.7	1	7,465.0	1	14,833.7	획지분할가능
			2	7,368.7	-	-	-
C-2	C-2	14,684.2	1	7,367.9	1	14,684.2	획지분할가능
			2	7,316.3	-	-	-
C-3	C-3	9,178.4	1	1,999.3	1	1,999.3	합병가능 (1~6)
			2	1,705.5	2	1,705.5	
			3	1,516.4	3	1,516.4	
			4	1,324.4	4	1,324.4	
			5	1,324.4	5	1,324.4	
			6	1,308.4	6	1,308.4	

3) 산업유통시설용지(변경없음)

4) 공공시설용지(변경없음)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- 1) 주택건설용지(변경없음)
- 2) 상업업무시설용지(변경)

가) 일반상업용지

○ 기정

도면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
C-1 C-2 C-3	C-1 C-2 C-3	용도	[건축법 시행령] 별표1 •제1종근린생활시설 •제2종근린생활시설(비디오감상실, 옥외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) •판매시설 중 “나” 목의 소매시장, “다” 목의 상점 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“가” 목의 공연장 및 “라” 목의 전시장 •교육연구시설 중 “라” 목의 학원 •운동시설 중 “가” 목의 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 •방송통신시설 •노유자시설 중 “가” 목의 아동관련시설 •관광휴게시설 중 “가” 목의 야외음악당, “나” 목의 야외극장 •업무시설 중 “나” 목의 일반업무시설 •(기정) 업무시설 중 “나” 목의 일반업무시설(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50% 이하가 되도록 할 것)
			불허 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「학교보건법」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(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)
		건폐율	•60% 이하
		용적률	•350% 이하
		높이	•150m 이하

○ 변경

도면 번호	위치	구분	계 획 내 용
C-1 C-2 C-3	C-1 C-2 C-3	<div style="display: flex; flex-direction: column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용도 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허용 </div> <div> 불허 </div> </div>	<p>[건축법 시행령] 별표1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제1종근린생활시설 •제2종근린생활시설(비디오감상실, 옥외골프연습장,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) •판매시설 중 “나” 목의 소매시장, “다” 목의 상점 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“가” 목의 공연장 및 “라” 목의 전시장 •교육연구시설 중 “라” 목의 학원 •운동시설 중 “가” 목의 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 •방송통신시설 •노유자시설 중 “가” 목의 아동관련시설 •관광휴게시설 중 “가” 목의 야외음악당, “나” 목의 야외극장 •업무시설 중 “나” 목의 일반업무시설 •(변경) 업무시설 중 “나” 목의 일반업무시설(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70% 이하가 되도록 하며, 그중 전체의 20%는 전용면적 40㎡ 미만으로 할 것) •(신설) 의료시설 중 “가” 목의 병원(정신병원 및 요양병원, 부수 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)
		<div style="display: flex; flex-direction: column;"> <div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건폐율 </div> <div style="margin-bottom: 10px;"> 용적률 </div> <div> 높 이 </div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60% 이하 •350% 이하 •150m 이하

3) 산업유통시설용지(변경없음)

4) 공공시설용지(변경)

가) 학교(변경)

○ 기정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	
초1 중1 고1	초1 중1 고1	용도	허용	[건축법 시행령] 별표1 •교육연구시설 중 “가” 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
			불허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30% 이하	
		용적률	•200% 이하	
		높 이	•30m 이하	
		배 치	•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(권장) •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(권장)	
		형 태	•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•고층부(옥상부)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(권장)	
		색 채	•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	
건축선	•(기정) 건축한계선 - 도로변: 10m			

○ 변경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 획 내 용	
초1 중1 고1	초1 중1 고1	용도	허용	[건축법 시행령] 별표1 •교육연구시설 중 “가” 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
			불허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30% 이하	
		용적률	•200% 이하	
		높 이	•30m 이하	
		배 치	•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(권장) •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(권장)	
		형 태	•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•고층부(옥상부)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(권장)	
		색 채	•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	
건축선	•(변경) 건축한계선 - 초1, 중1 도로변: 3m / 고1 도로변: 10m			

- 나) 공공청사(변경없음)
- 다) 체육시설(변경없음)
- 라) 주차장(변경없음)
- 마) 공급처리시설(변경없음)
- 바) 주유소(변경없음)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